

# 202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1. 8.(월) 10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조태준 위원, 이종수 위원, 이승민 위원, 원은자 위원, 권현정 위원</li> <li>○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성미 주무관(서기)</li> </ul>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1 : 2019년, 2022년 신규임용 운전직 공무원 초임호봉 확정자료</li> </ul>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1 : 부분인용</li> </ul>

# 1. [의안번호 2024-1] : 2019년도와 2022년도 지자체 지방공무원

## 신규임용 운전직 공무원 초임 호봉 확정자료

### ○ 000 위원장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호 인사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 000 위원장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그 자료는 읽어봤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청구인께서 2019년, 2022년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이게 특정해서 해당 연도의 자료를 요청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과 2022년에만 운전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이 있었던 건가요?

### ○ 000 주무관

운전직 채용은 매년 있는 거고요. 청구인께서 특정 연도로 지정해서 요청하셨습니다.

### ○ 000 위원장

그러면 혹시 신규채용에 어플라이 하셨던 어떤 특정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호봉 인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걸로 이해하시는 건가요?

### ○ 000 주무관

2019년, 2022년에 임용된 운전직을 대상으로 유사경력 합산 승인내역을 요청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청구인께서 2023년 12월 7일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기존 심의회에 올렸던 그런 안건인가요, 아니면 인사과에서 자체적으로 부분공개를 하신 건가요?

○ 000 주무관

저희가 자체적 부분공개를 결정해서요.

○ 000 위원장

자체적으로 부분공개하신 거고, 그다음에 기각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보면 행안부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경기도랑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정분야 몇 프로냐, 그다음에 경기도도 그런 류의 자료를 제공을 한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민간 부문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대체로 보니까 다 100% 인정한 것 같은데, 100%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공개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지 않나요?

○ 000 주무관

강원도처럼 공개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버스경력만 인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버스경력을 인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부분공개하셨다라는 게 여기 결정통지서에 말로 두 줄 써놓은 이거 공개하셨다라는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별도 자료를 주신 건 아니고.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그리고 이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이 오타를 낸 것 같기도 한데, 2019년도와 2022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운전직 공무원 신규임용자분들의 자료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건 서울시 자료지 경기도 자료는 없는 거 아닌가요?

○ 000 주무관

경기도 자료는 없고요. 그 청구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경기도도 있을 것 같고, 지방 자치단체의 운전직 경력을 공개하라는 청구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경기도라고 쓴 거는 오탈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신 거네요. 그런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이거 이분이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경력을 요구한 건데, 산정과 관련해서. 두 줄로 해놓으니까 사실 거의 다 공개해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두 줄로 해놓으니까 이분이 이해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2019년하고 2022년도하고 나눠서 이 앞에 부분 이의신청인이 청구한 자료대로 담당직 무하고, 연도, 근무내용 이런 걸로 해서 100% 산정했다 이렇게 표로 좀 간단하게 정리 해서 주셔도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신가요?

○ 000 주무관

저희는 신규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 000 위원

개인정보 부분은 빼고, 연도수로 나눠서, 버스운전경력이면 그 부분 표로 나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뭉뚱그려놔서 이분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줄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놔서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분도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비공개도 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 000 주무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부서 의견대로 해당 운전직 신규채용 공무원의 과거 경력 호봉 산정 기준에 있어서 과거의 해당 어느 업체나 버스회사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구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도 나중에 이런 직렬에 신규임용될 때 호봉경력의 인정을 얼마를 받을 건가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공개했듯이 대형버스 1종 운전면허만 갖고 있으면 100%가 아니라 해당 과거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버스회사에서 1년 근무 100% 이 정도는 정보를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것처럼 특정 업체를 명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어느 버스업체에서 1년 100% 이 정도는 공개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 000 주무관

신규직원들이라고 특정되어 있어서 이게 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어서 공통사항인 버스경력 인정 부분만 공개를 했던 겁니다.

○ 000 위원

아니, 신규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갖고서는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 000 주무관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저희도 공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주무관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의결사항 말씀드릴 때 그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제공했던 것처럼 개인정보와 관련된, 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라든지 아니면 근무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민간부문에서 근무에 종사했던 기간, 근무내용, 인정 여부 이 정도는 공개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 000 위원

경기도 사례에 첨부된 것과 강원도 사례에 첨부된 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실 경기도 답변내용은 이렇게 표가 들어가고 좀 길게 풀어서 썼다 뿐이지 지금 서울시 답변이랑 정보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강원도 것에는 경력을 인정해 준 기간과 근무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라는 취지 자체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내용과 유사경력 기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그냥 이 서울시 내용이랑 버스운전은 동일하게 인정했다 이 내용이고 그냥 다른 정보는 없거든요, 경기도 거는. 동일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강원도랑 비교했을 때 업무분야와 업무기간까지를 서울시가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공개할 건지, 아니면 지금 내용을 조금 경기도처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할 건지가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 ○ 000 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아마 정보공개청구인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전경력 100% 호봉경력이 인정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에 보면 버스, 화물, 택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청구인이 궁금한 거는 택배나 화물, 버스운전처럼 다른 대형면허를 갖고 한 것도 100%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 호봉경력산정위원회에서 정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우리 사안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단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했던 게 보면 대부분 다 버스운전으로 경력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그 사항만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 버스운전경력 100%가 인정됐다고 하는 부분만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화물, 택배 부분은 청구인은 정작 그걸 궁금해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 ○ 000 위원장

그러면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담당직무, 예를 들어서 엑셀파일을 보게 되면 A라는 분은 대형버스를 운전했다, 뭐 시내버스 운전했다, 셔틀버스 운전했다 이 부분은 공개를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 ○ 000 위원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저쪽에서 따로 그걸 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적시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정보공개청구인은 궁금한 거는 아마 그것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버스운전 말고도 다른 운전경력을 갖고서도 100% 이게 인정이 되느냐 그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 합당한 정보를 우리가 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 ○ 000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어떤 기준이 되는 물을 물어본 게 아니라 기존의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상태만 공개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원도는 여기 보면 차량관리, 굴삭기운전 이런 것도 인정한 예가 있어서 아마 조금 청구인한테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버스운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답변은 좀 불충분한 것이 1종대형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버스는 인정했다 해 주니까 그러면 면허 소지만 있어도 다 인정했다는 건지.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력기간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다 100% 인정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냥 버스운전을 했다,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그게 마을버스인지 통근버스인지 관광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이런 것도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버스 그것들을 이렇게 열거해 주고, 몇 퍼센트 동일 분야 인정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가지고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유사경력은 100% 인정이니까 경력기간은 빼도 될 것 같고요. 연도별로 나눠서 근무내용 인정 여부 이렇게 표로 구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위원님들, 근무내용도 제외하자는 의견이신가요?

○ 000 위원

근무내용을 마을버스, 관광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해 주지 말고 그냥 버스운전 이렇게만 해 주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 000 위원장

포괄적으로요?

○ 000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좀 특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력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불필요하고, 경기도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요. 유사경력 기간은 불필요하고, 근무내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버스운전으로 하고요. 인정 여부 100% 공개하고, 비고도 동일 분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한 이 정도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부분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소관부서 담당자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여기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유사경력 기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필요 없고요. 근무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버스운전으로, 그리고 인정 여부는 100% 다 해 주셨으니까 100% 하는 걸로 하고, 비고는 동일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부분인용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1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